

2022. 12. 06.(화) 10:00

제30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 9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논공읍 남리·북리, 현풍읍 원교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이 많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함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현풍읍·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비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양묘장 부지매입

- 양묘장 및 자재보관장으로 무상대부 중인 시유지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정원 소품 제작 및 자재 보관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변경

- 지역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지역적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골자

○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 논공읍 남리 224- 9번지 외 1필지
- 기간 : 2023. 1. ~ 2023. 12.
- 면적 : 684㎡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28면정도)
- 총사업비 : 1,300백만 원 정도(군비)
 - 부지매입비 950백만 원, 공사비 350백만 원정도

○ 논공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 논공읍 북리 824- 30번지
- 기간 : 2023. 1. ~ 2023. 12.
- 면적 : 356㎡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14면정도)
- 총사업비 : 1,100백만 원 정도(군비)
 - 부지매입비 850백만 원, 공사비 250백만 원정도

○ **현풍 원교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 치 : 현풍읍 원교리 30-2번지
- 기 간 : 2023. 1. ~ 2023. 12.
- 면 적 : 549m²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20면정도)
- 총사업비 : 1,200백만 원 정도(군비)
 - 부지매입비 950백만 원, 공사비 250백만 원정도

○ **현풍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 위 치 : 현풍읍 부리 352-3번지 외 5필지
- 기 간 : 2023. 1. ~ 2023. 6.
- 규 모 : 부지면적 742m² / 건물연면적 470.92m²
- 주요시설 : 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21면정도)
- 총사업비 : 1,600백만 원 정도(군비)
 - 부지매입비 1,300백만 원, 주거이전비 등 300백만 원정도

○ **구지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 위 치 : 구지면 창리 429-9번지 외 2필지
- 기 간 : 2023. 1. ~ 2023. 6.
- 규 모 : 부지면적 545.9m² / 건물연면적 292.44m²
- 주요시설 : 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15면정도)
- 총사업비 : 1,600백만 원 정도(군비)
 - 부지매입비 1,200백만 원, 영업보상비 등 400백만 원정도

○ **양묘장 부지 매입**

- 위 치 : 화원읍 본리리 331외 14필지
- 기 간 : 2023. 1. ~ 2023. 6.
- 면 적 : 3,260m²
- 매 입 비 : 1,000백만 원 정도(군비)

○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변경]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기 간 : 2017. 9. ~ 2023. 8.
- 부지면적 : 23,000㎡
- 건축면적 : 2,539㎡(연면적 5,078.54㎡ / 지상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등
- 총사업비 : 179.3억 원(국비 30억, 군비 149.3억)
 - 공사비 158.5, 감리비 14, 설계비 6.8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사업규모 (연면적)	5,358㎡	5,078.54㎡	279㎡(감)
총사업비	130억 원	179.3억 원	49.3억 원(증)
시설용도	수영장, 영유아폴 헬스장, G·X룸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주차장	수영장, 영유아폴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비 고
공사비	158.5	51.5	50	57	
설계비	6.8	6.8			
감리비	14		14		
계	179.3	58.3	64	5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계				9 (36)	11,978.8	20,614,262	9 (36)	11,977	20,614,262
1.매입	토지			6 (28)	6,136.9	2,607,708	6 (28)	6,136	2,607,708
	건물			3 (8)	5,841.9	18,006,554	3 (8)	5,841	18,006,554
2.교환	토지								
	건물								
3.기타	토지								
	건물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토지)	대	대	논공읍	224 - 9	351	351	163,425,600	2023.12.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김○○	
				224 - 14	333	333	160,705,800			대구시 서구 내당동	김○○	
2 (토지)	대	대	논공읍	824 - 30	356	356	242,792,000	2023.12.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4길 13	권○○ 장○○	
3 (토지)	답	답	현풍읍	30-2	549	549	321,659,100	2023.12.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반○○	
4 (토지)				352-3	172	172	87,616,800	2023.6.	현풍읍행정 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부리	함○○	
				352-9	151	151	98,255,700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27길	임○○	
	대			352-7	99	99	51,499,800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이○○ 임○○	
			현풍읍 부리	358	162	162	82,620,000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부리	박○○	
				370-1	78	78	38,984,400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최○○	
	도	도		511	80	80	86,800,000			-	국(건 설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 (건물)			부리	352-3	89.73	3,589,200	2023.6.	현풍읍행정 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부리	함○○	
				352-9	78.4	3,351,600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27길	임○○	
				352-7	150	15,200,000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이○○ 임○○	
				358	126.27	9,343,980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부리	박○○	
				370-1	26.52	1,026,323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최○○	
6 (토지)			창리	429-9	220	284,020,000	2023.12.	구지면행정 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	손○○	
	대 대	구지면		429-10	208.2	261,291,000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	손○○ 박○○	
				429-15	117.7	141,710,800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	박○○	
7 (건물)			창리	429-9	194.64	32,404,989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	손○○	
				429-10	97.8	11,638,200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	손○○ 박○○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 (토지)	답	화원읍 본리리			331	306	51,714,000	2023.6.	양묘장 부지매입	-	대구 광역시	
					332	238	40,222,000					
					333	263	44,447,000					
					333-1	355	59,995,000					
					333-2	345	58,305,000					
					333-67	222	37,518,000					
					333-69	298	50,362,000					
					333-71	222	43,889,400					
					333-73	157	31,038,900					
					333-75	152	30,050,400					
9 (건물)	답	상리	유기읍	971	333-77	156	30,841,200	2023.8	스포츠센터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건축
					333-79	186	36,772,200					
					333-81	189	37,365,300					
					333-83	138	27,282,600					
					333-85	33	6,524,100					
						17,930,000,000 (건축비)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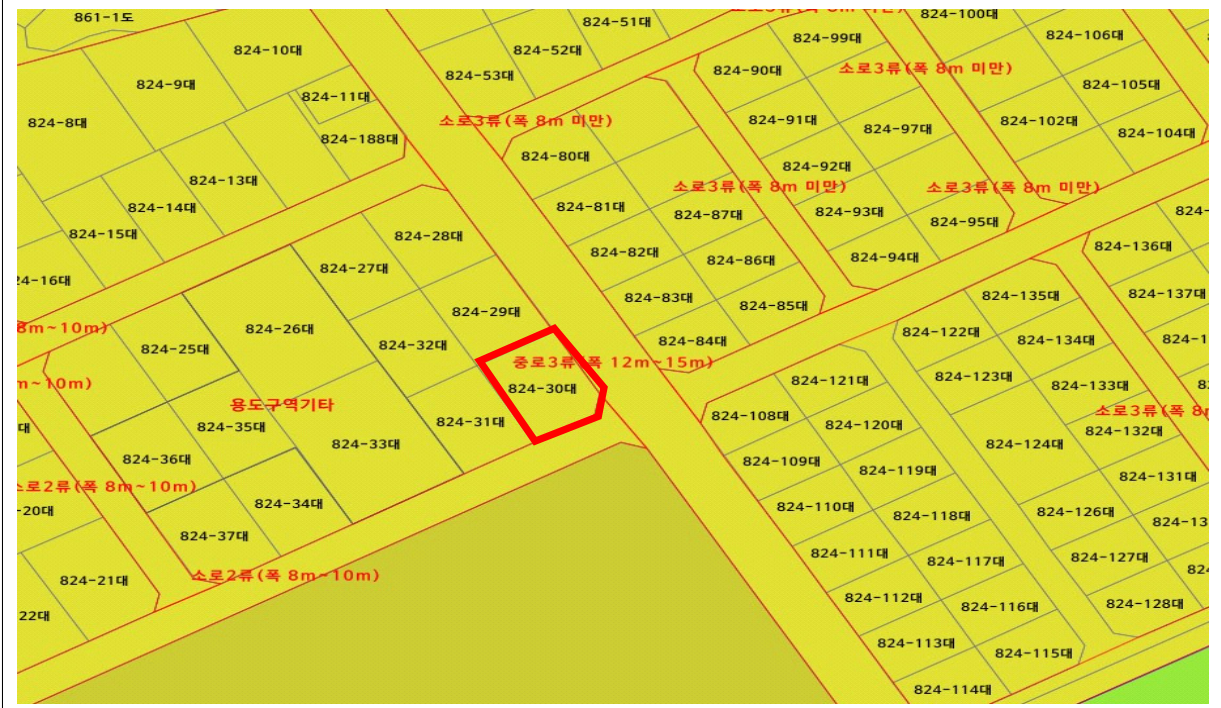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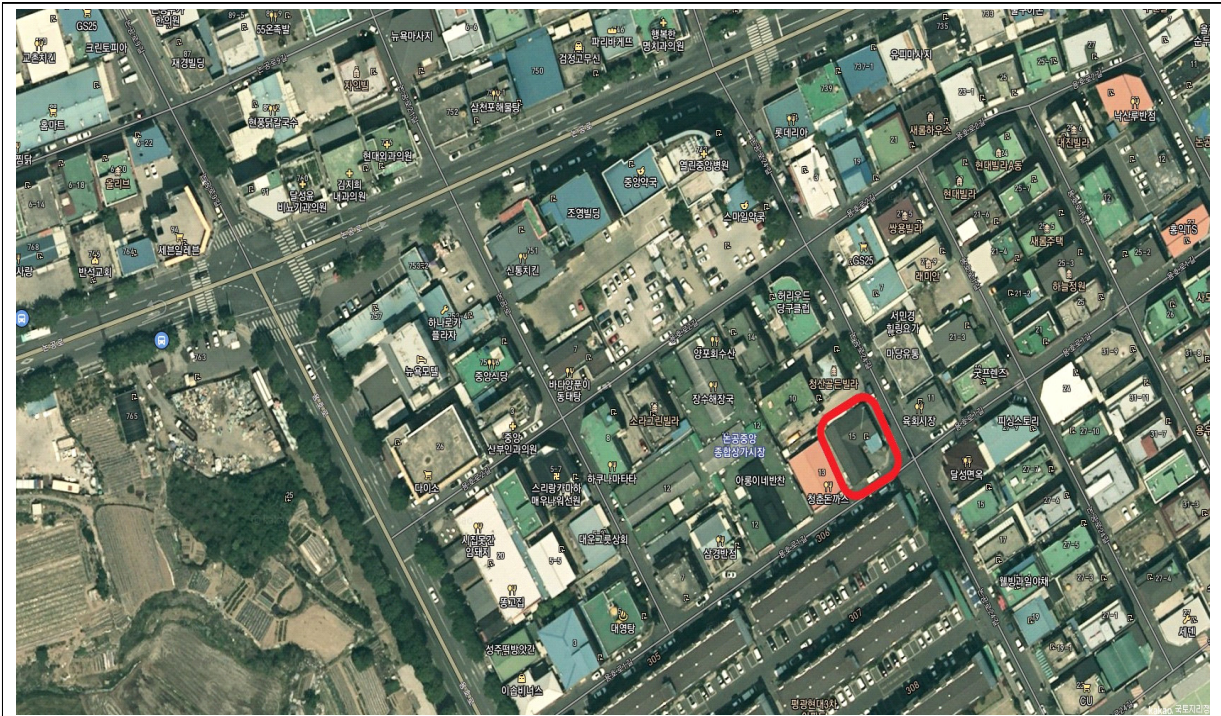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224 -9, 224 -14번지



위 치 도

【논공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3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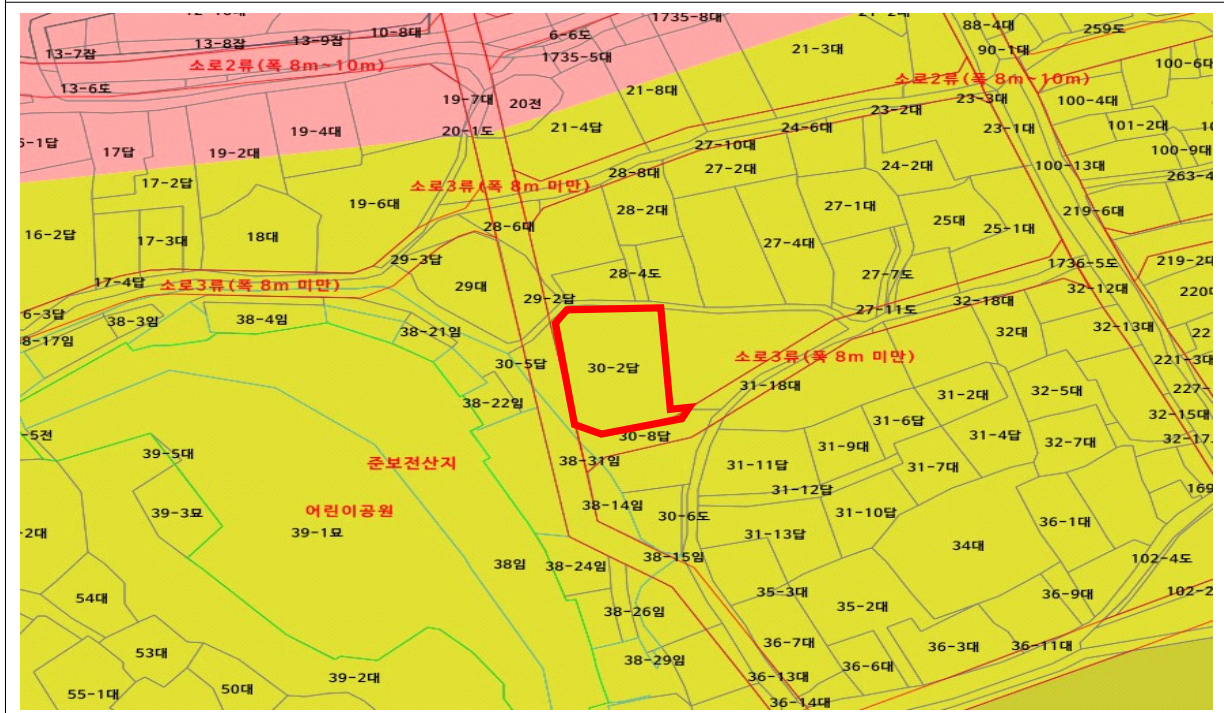


현장사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 - 30번지



【현풍 원교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30 - 2번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명 : 현풍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부리 352-3 외 5필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명 : 구지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9 외 2필지



위 치 도

【양묘장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331외 14필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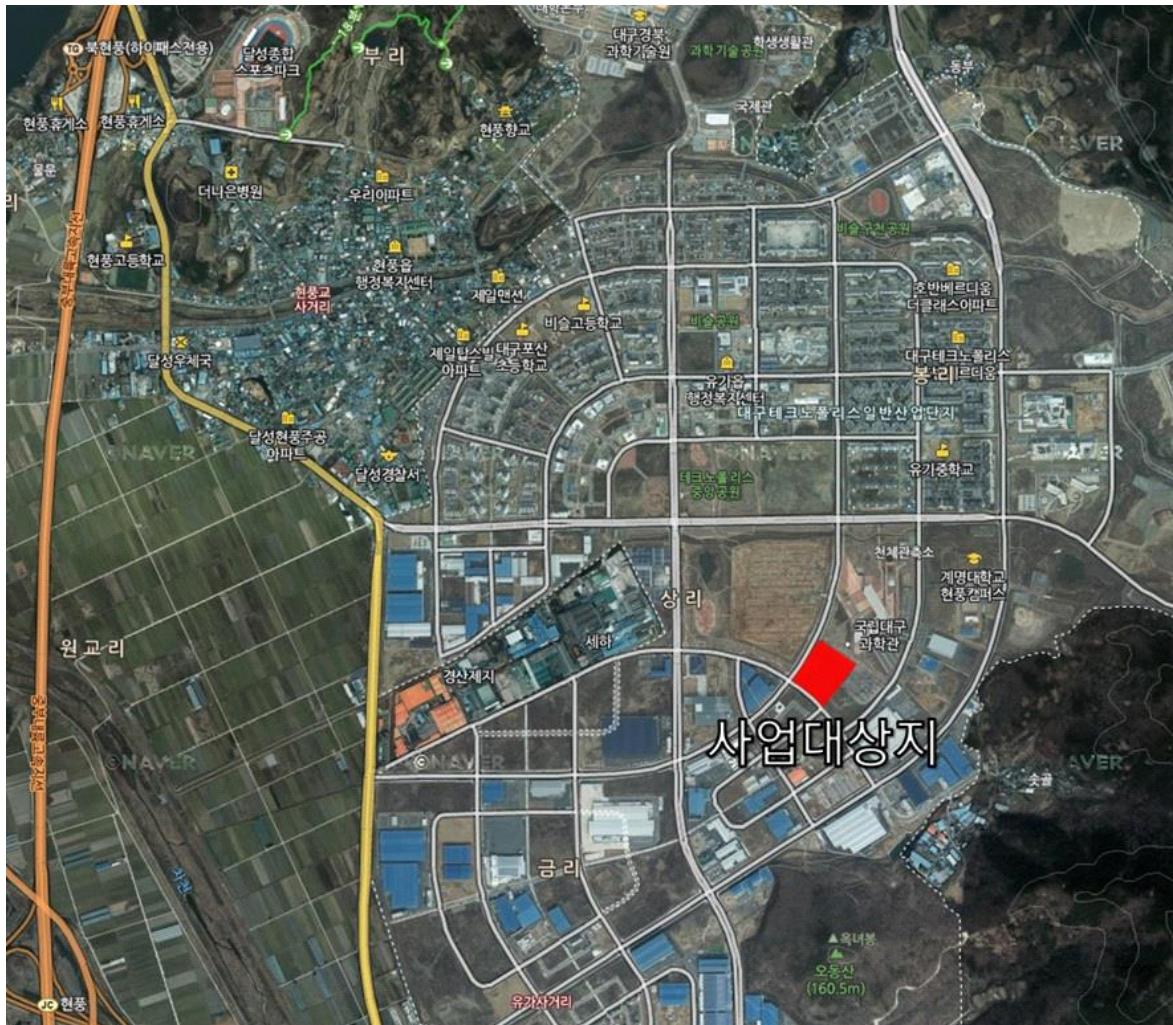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331외 14필



위 치 도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조 감 도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II. 검토의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논공읍 남리·북리,현풍읍 원교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마을 내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 교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점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면수 62면(논공읍 남리 28면, 북리 14면, 현풍읍 원교리 20면)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현풍읍·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 신규공동주택단지와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등으로 늘어나는 자차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현풍읍 21면, 구지면 15면의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양묘장 부지매입

- 대구시에서 무상대부 받아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화초 양묘장 및 자재 보관장으로 사용중인 사유지를 시 재정확보를 위해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고급 화초를 자체 생산후 주요 관광지에 공급하기 위한 양묘장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테크노스포츠허브센터 건립공사 변경

-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달성테크노스포츠허브센터 건립에 있어 건축 연면적을 5,358

m²에서 279m²가 감소한 5,079m²로 변경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결과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236만원에서 334만원
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건축비가 130억원에서 49억 3천만원이 증액된
179억 3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그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3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938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금으로 배정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대 표 : 배진환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서초구, (인력) 정원 92명/현원 69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 업 비	○ <u>출연 예정금액 : 23,938천원(군비 23,938천원)</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 계		24,925	23,938				23,938	
	기관 운영비	1년	16,849	17,406				17,406	
주요 사업비	1년	8,076	6,532				6,532		
연구사업	1년	2,742	2,285				2,285		
자치단체지원	1년	5,334	4,247				4,247		
출 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사업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 감사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였고, 특히 교육·학술행사 등 대외 활동은 온라인 중계행사 등 대안을 마련 원활히 수행하였음
- 결산서 및 외부감사인(신우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계획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 운영실적 평가

- 연구과제의 양적·질적 증가, 정책 반영 확대, 고객지향적 실효성 확대 등 그 성과가 확대되었으나, 연구의 질 향상 및 관리체계의 적성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등 예산운용 기준과 예산집행절차는 적정. 향후 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체수입 즉, 외부 수탁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협력사업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나, 연구원의 핵심업무영역으로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과 연구원 전체의 업무에서 비중 설정이 필요함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연구사업과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결산 지방세	2021년 결산 보통세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199,481,248	199,479,612	23,938	23,938	0	△938

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 고
○	○	○	○	○	○	○	

출연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월 설립등기 ◦ 2011. 4월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2. 8월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 · 파견		
	85명		69명 (원장 1, 부원장 1, 연구위원 22, 연구원 17, 조사분석직 6, 전문직 3, 사무직 18, 시설직 1)		16명 (위촉연구원 5, 파견공무원 9, 청사관리원 2)		
임원 (’22.8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 12. 22. ~ ’23. 12. 21.		
	부이사장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22. 2. 28. ~ ’23. 2. 27.		
	이사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2. 2. 28. ~ ’23. 2. 27.		
	이사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2. 2. 28. ~ ’23. 2. 27.		
	이사	김기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2. 2. 28. ~ ’23. 2. 27.		
	이사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2. 2. 28. ~ ’23. 2. 27.		
	이사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22. 2. 28. ~ ’23. 2. 27.		
	이사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2. 2. 28. ~ ’23. 2. 27.		
	이사	김재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2. 2. 28. ~ ’23. 2. 27.		
	이사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2. 2. 28. ~ ’23. 2. 27.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22. 2. 28. ~ ’24.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10,821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21. 12. 31.기준	자산	20,999
	예산액 ²⁾	10,855	11,928	14,200		부채	1,147
	지자체 지원액 ³⁾	8,972	10,821	11,160		자본 ¹⁾	19,853
경영성과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76				11,094		1,28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II. 검토의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3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 640백만 원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8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대 표 : 차준용(비영리 공익법인, 2008. 10. 15. 설립)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 기본재산 : 20억 원(달성군 출연금) - 주요사업 · 시설운영: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48개 수탁시설 · 모금사업: 기부 및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 · 배분사업: 지정 · 결연 후원, 저소득 가정 지원, 후원물품 등 · 기획사업: 홀로어르신 명절나기,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지원 등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 금액: 6억 4,000만 원 - 운영비: 6억 4,000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 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2년 요구액</th><th rowspan="2">2023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인 건 비</td><td>2023.1.1. ~12.31.</td><td>445</td><td>540</td><td>540</td><td>-</td><td>-</td><td>540</td><td>-</td></tr><tr><td>기본경비</td><td>2023.1.1. ~12.31.</td><td>123</td><td>98</td><td>98</td><td>-</td><td>-</td><td>98</td><td>-</td></tr><tr><td>사 업 비</td><td>2023.1.1. ~12.31.</td><td>54</td><td>0</td><td>0</td><td>-</td><td>-</td><td>-</td><td>-</td></tr><tr><td>예 비 비</td><td>2023.1.1. ~12.31.</td><td>0</td><td>2</td><td>2</td><td>-</td><td>-</td><td>2</td><td>-</td></tr></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2년 요구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 건 비	2023.1.1. ~12.31.	445	540	540	-	-	540	-	기본경비	2023.1.1. ~12.31.	123	98	98	-	-	98	-	사 업 비	2023.1.1. ~12.31.	54	0	0	-	-	-	-	예 비 비	2023.1.1. ~12.31.	0	2	2	-	-	2	-
구 분	사업기간					2022년 요구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 건 비	2023.1.1. ~12.31.	445	540	540	-	-	540	-																																											
기본경비	2023.1.1. ~12.31.	123	98	98	-	-	98	-																																											
사 업 비	2023.1.1. ~12.31.	54	0	0	-	-	-	-																																											
예 비 비	2023.1.1. ~12.31.	0	2	2	-	-	2	-																																											
출 연 필요성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출연금 교부)																																																		

사업부서의 견 (총평)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음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8개 수탁시설 복지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복지정책과 부서 의견은 달성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한 군 출연금 6억4,000만원 교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함.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의견

- 2023년 출연금 6억 4,000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건비 및 사회보험 기본 인상률에 맞춰 인건비 기본경비 증액
 -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직급보조비 및 시책추진비 반영
 -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감액
 - 사업비는 순세계 잉여금 및 기타 수익으로 진행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A)	2023년 예산(안)			
			기 관 요구액(B)	부 서 검토액(C)	증 감 (C-B)	전년대비 증감액(C-A)
총 계	676	622	640	640	0	18
인 건 비	397	445	540	540	0	95
기본경비	201	123	98	98	0	▲25
홍보사업	3	0	0	0	0	0
교육훈련비	22	1	0	0	0	▲1
수탁시설전출금	53	53	0	0	0	▲53
예 비 비	0	0	2	2	0	2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전화번호	053-617-9200	
					홈페이지	www.dswelfare.kr	
설립근거	법률 :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8. 10. 15.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대표이사 (비상임)	차준용	前 달성문화원 원장			2021. 1. 18.~2023. 1. 17.	
	상임이사	최상진	前 달성군 자치행정국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김상근	(사)수경복지재단 이사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이은진	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진덕수	(사)덕수복지재단 이사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이미애	사회복지법인 서재어린이집 원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신후남	前 달성군 주민복지국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오대진	前 달성군자원봉사센터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감사	김대근	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			2021. 1. 18.~2023. 1. 17.	
	비상임감사	장명진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21. 1. 18.~2023. 1. 17.	
주요기능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1. 12. 31. 기준)	자산	3,234백만 원
	예산액	1,454 백만 원	1,474 백만 원	1,680 백만 원		부채	-
	지자체 지원액	814 백만 원	676 백만 원	622 백만 원		자본	3,234백만 원

II. 검토의견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출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8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1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3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3,643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1,178백만 원
 -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2,465백만 원
 - 건전한 문화예술 선도의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달성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달성군 대표 문화 브랜드를 통한 지역 홍보 및 가치 제고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3,643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2 예산액 <최종>	2023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 계		2,833	3,643	3,643	-	-	3,643	-
	인력운영비	1~12월	627	794	794	-	-	794	-
	기본경비	1~12월	306	384	384	-	-	384	-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200	450	450	-	-	450	-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월	150	430	430	-	-	430	-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12월	200	200	200	-	-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 센터 운영	1~12월	150	125	125	-	-	125	-
	예술자치구역	1~12월	50	150	150	-	-	150	-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20	120	120	-	-	120	-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250	120	120	-	-	120	-
	달성음악회	1~12월	40	-	-	-	-	-	-
	YES! 키즈존	5월 10월	-	290	290	-	-	290	-
	성악중창 페스티벌	1~12월	95	-	-	-	-	-	-
	문화기획지원	1~12월	20	180	180	-	-	180	-
	도동페스타	5~6월	75	-	-	-	-	0	-
	문화도시사업 (공모사업)	1~12월	550	200	200	-	-	200	-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	200	200	-	-	200	-
출 연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부서 의 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2. 3. ~ '22. 6.)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0.61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7.32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6.43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6.86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0.61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3년 출연금 3,643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178백만 원
 - 2023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자체사업비 2,465백만 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최종> (A)	2023년 예산(안)			
			재단 예산액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전년대비 증감액 (B-A)
총 계	2,845	2,833	4,750	3,643	3,643	810
기관운영비	1,119	933	1,585	1,178	1,178	245
인력운영비	721	627	1,001	794	794	167
기본경비	398	306	584	384	384	78
자체사업비	1,726	1,900	3,165	2,465	2,465	565
달성 100대 피아노	-	200	550	450	450	25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377	150	530	430	430	280
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	159	200	200	200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58	150	125	125	125	△25
예술자치구역	140	50	150	150	150	10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75	120	120	120	120	-
달성 스토리텔링	205	250	120	120	120	△130
달성음악회	-	40	-	-	-	△40
YES! 키즈존	-	-	290	290	290	290
성악중창 페스티벌	-	95	-	-	-	△95
문화기획지원	107	20	180	180	180	160
도동페스타	-	75	-	-	-	△75
문화도시사업 (공모사업)	454	550	600	200	200	△350
달성문화교차로	-	-	200	200	200	200
새봄맞이음악회	2	-	-	-	-	-
달성고유물수집사업	25	-	-	-	-	-
10주년 기념백서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92	-	-	-	-	-
학술세미나·비전선포식	32	-	-	-	-	-
예비비	-	-	100	-	-	-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05.17. 등기						
임원 (21.10.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정대용	경산시립예술단 단무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허수정	CM코리아 공연기획 대표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호현	달성군 문화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2.8.23.~2024.8.22	
	감사	박은주	달성군 문화예술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1.12.31 기준	자산	9,586백만원
	예산액	6,692	7,020	7,070		부채	1,623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5,437	4,782	4,553		자본	7,963백만원

-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II. 검토의견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출연금은 지역의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군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재원으로,
-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 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것이며,
- 문화컨텐츠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통해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 ☐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잉여금 발생 최소화,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최대한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대내외 리스크·물가 상승 등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였으며,
-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확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민참여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며,
-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며, 생활SOC 등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의 안전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함

4. 예산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880,000	100.00	
일반회계	878,600	99.87	
특별회계	1,400	0.13	
기타특별회계	1,400	0.13	
의료급여기금	841	0.09	
치수사업	559	0.04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880,000	816,000	64,000	7.84
일 반 회 계	합 계	878,600	814,900	63,700	7.82
	지 방 세 수 입	218,321	198,695	19,626	9.88
	세 외 수 입	38,867	38,097	770	2.02
	경상적 세외수입	25,106	24,467	639	2.61
	임시적 세외수입	7,392	7,845	△453	△5.7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369	5,785	583	10.08
	지 방 교 부 세	168,575	169,347	△772	△0.46
	조 정 교 부 금 등	31,014	35,198	△4,184	△11.89
	보 조 금	417,309	366,930	50,379	13.73
	국고 보조금 등	273,321	240,745	32,576	13.53
	시·도비보조금등	143,988	126,185	17,803	14.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15	5,483	△968	△17.66
특 별 회 계	합 계	1,400	1,100	300	27.27
	세외수입	191	37	154	422.29
	경상적세외수입	3	6	△3	△61.86
	임시적세외수입	188	31	157	509.98
	보 조 금	598	604	△6	△1.04
	국고보조금등	478	483	△5	△1.04
	시·도비보조금등	120	121	△1	△1.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	459	153	33.16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80,000	816,000	64,000	7.84
일반회계	계	878,600	814,900	63,700	7.82
	일반공공행정	52,711	42,875	9,836	22.94
	공공질서및안전	6,130	5,335	795	14.91
	교육	12,973	12,639	334	2.64
	문화 및 관광	46,261	31,354	14,907	47.55
	환경	28,267	27,926	341	1.22
	사회복지	388,430	341,912	46,518	13.61
	보건	26,035	29,026	△2,991	△10.31
	농림해양수산	58,135	52,858	5,277	9.9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01	3,049	△148	△4.86
	교통및물류	68,672	86,790	△18,118	△20.88
	국토및지역개발	72,897	64,442	8,455	13.12
	예비비	11,515	18,384	△6,869	△37.36
	기타	103,674	98,309	5,364	5.46
특별회계	계	1,400	1,100	300	27.27
	사회복지	598	500	98	19.60
	국토및지역개발	266	162	104	64.68
	기타	536	438	98	22.24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80,000	816,000	64,000	7.84
일 반 회 계	계	878,600	814,900	63,700	7.82
	인 건 비	93,357	89,234	4,123	4.62
	물 건 비	42,983	41,163	1,820	4.42
	일 반 운 영 비	31,514	30,588	926	3.03
	여 비	2,459	2,437	22	0.91
	업 무 추 진 비	739	737	2	0.32
	직무 수행 경비	2,791	2,565	226	8.79
	의 회 비	714	550	164	29.70
	재 료 비	2,887	2,149	738	34.35
	연 구 개 발 비	1,879	2,137	△258	△12.08
	경 상 이 전	524,263	466,720	57,543	12.33
	자 본 지 출	204,501	197,515	6,987	3.54
	시설비및부대비	179,221	176,612	2,609	1.48
	민간 자본 이전	11,766	11,498	268	2.33
	자차단체등자본이전	3,867	4,825	△958	△19.86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635	1,222	413	33.80
	자 산 취 득 비	8,012	3,315	4,697	141.69
	내 부 거 래	1,976	1,882	94	5.01
	예비비 및 기타	11,520	18,386	△6,866	△37.35
특 별 회 계	계	1,400	1,100	300	27.27
	인 건 비	293	341	△48	△14.01
	물 건 비	41	37	4	11.11
	경 상 이 전	578	488	90	18.46
	자 본 지 출	90	141	△51	△36.29
	예비비 및 기타	398	93	305	326.07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8,160억원 보다 640억원(7.84%)이 늘어난
8,80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8,149억원 보다
637억원(7.82%)이 증가된 8,786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1억원 보다 3억원이 증가한 14억원입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있어

- 지방세 2,183억 2천만원,
세외수입 388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1,685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등 310억 1천만원,
보조금 4,173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억 1천만원 등
총 8,78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전년대비 17억 6천만원 증가한 124억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70억 9천만원 증가한 669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8억 5천만원 증가한 379억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6억원 증가한 168억원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29억 9천만원 증가한 169억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63억 1천만원 증가한 644억원 등
총 196억 2천만원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2,18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7억 7천만원 증가한
388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1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3억 9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억 7천만원 감소한
1,68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조정교부금등은 41억 8천만원 감소한
3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325억 7천만원 늘어난
2,733억 2천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은 178억원 늘어난
1,439억 8천만원으로
총 4,1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능별 분류에서는

- 일반공공행정분야	527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1억원
- 교육분야	129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	462억원
- 환경분야	282억원
- 사회복지분야	3,884억원
- 보건분야	2,600억원
- 농림해양 수산분야	581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9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	686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28억원
- 예비비·기타	1,15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보수 552억 8천만원, 기타직보수 40억 2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8억 6천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84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4.62% 증가한 9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315억 1천만원, 여비 24억 5천만원,
업무추진비 7억 3천만원, 직무수행경비 27억 9천만원,
의회비 7억 1천만원, 재료비 28억 8천만원,
연구개발비 18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4.42% 증가한 42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575억 4천만원이 늘어난

5,24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1,792억 2천만원,
민간자본이전 117억 6천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8억 6천만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6억 3천만원, 자산취득비 80억 1천만원 등
총 2,0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 3천만원,
기금전출금 19억 4천만원 등 1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읍·면 예산의 경우

읍·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읍장 360만원, 면장 240만원 이며,
다사읍의 경우 과장 240만원, 다사읍장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된
읍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4억 5천만원,
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청사관리 등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화원 62억원, 논공 45억원, 다사 64억원,
유가 42억원, 옥포 43억원, 현풍 38억원, 가창 29억원,
하빈 26억여원, 구지 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2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된
1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천만원이 증가된
8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된
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

○ 2023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고,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군의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78%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52.5%입니다.

재정자립도 : 29.78%

구 분	세입 총규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액	878,600	218,321 (24.84%)	38,867 (4.42%)	4,515 (0.51%)

※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등 내부거래)÷예산규모}×100%

재정자주도 : 52.50%

구 분	세입 총규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액	878,600	218,321 (24.84%)	38,867 (4.42%)	168,574 (19.19%)	31,014 (3.53%)	4,515 (0.51%)

※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등내부거래+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예산규모}×100%

-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은 교육 정책 분야, 장애인 관련 지원, 자활근로사업, 농업정책사업 기금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하며,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수요 확대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44.21%로 가장 비중이 많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8.30%, 교통 및 물류 예산이 7.82%이고,
농림해양수산업이 6.62%, 일반공공행정이 6.00%,
문화 및 관광이 5.27% 순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465억원이 증액되어 13.61%증가하였으며,
2021년 비중이 39.49%, 2022년 41.96%로 매년 세출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2023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47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5억원,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35억원,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35억원,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억원,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47억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13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68억원,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57억원,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83억원,
비슬산관광지 조성 공사비 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투자사업중 신규사업은 사업초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되는 사업은 향후 운영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예산 투자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기금의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 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 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대구 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 으로 관리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대구 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 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치행정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자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 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위생과	
자활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 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 조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활용을 위 하여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8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 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대구광역 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기금	1999	군민들의 체력 증진 및 지 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 업 추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0조	체육진흥과	

4. 기금의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 입 금	보조금	융자·예치금 회수	이 자	기 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지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 지출
계	172,991,343	1,946,040	26,000	168,028,629	2,707,674	283,000	172,991,343	1,087,500	30,000		171,502,066	327,237	4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49,825,454	0	0	147,492,101	2,333,353	0	149,825,454	0	0		149,825,454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249,802	0	0	6,155,185	94,617	0	6,249,802	0	0		5,922,565	327,237	0
고향사랑기금	224,400	0	0	0	4,400	220,000	224,400	0	0		224,400	0	0
식품진흥기금	152,751	0	26,000	82,751	6,000	38,000	152,751	40,500	0	540	67,711	0	44,000
자활기금	910,274	0	0	870,924	11,600	25,000	910,274	10,000	30,000		870,274	0	0
재난관리기금	14,637,025	1,946,040	0	12,448,372	242,613	0	14,637,025	990,000	0		13,647,025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11,677	0	0	207,506	4,171	0	211,677	27,000	0		184,677	0	0
체육진흥기금	779,960	0	0	769,040	10,920	0	779,960	20,000	0		759,960	0	0

5.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㉑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입㉓	지출㉔		
합 계	168,025,879	4,965,464	1,489,277	171,502,066	3,476,1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47,492,101	2,333,353	0	149,825,454	2,333,3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155,185	94,617	327,237	5,922,565	△232,620
고향사랑기금	0	224,400	0	224,400	224,400
식품진흥기금	82,751	70,000	85,040	67,711	△15,040
자활기금	870,924	39,350	40,000	870,274	△650
재난관리기금	12,448,372	2,188,653	990,000	13,647,025	1,198,653
옥외광고발전기금	207,506	4,171	27,000	184,677	△22,829
체육진흥기금	769,040	10,920	20,000	759,960	△9,080

6. 기금별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지원대상

- 세입감소 또는 심각한 경제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 2023년 주요사업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49,825,454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①	2023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103,867,351	147,492,101	149,825,454	2,333,35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지원대상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2023년 주요사업

- 통합계정 예치금 5,922,565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①	2023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6,831,907	6,155,185	5,922,565	△232,620	

□ 고향사랑기금

○ 지원대상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2023년 주요사업

-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224,4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①	2023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0	0	224,400	224,400	

□ 식품진흥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자 및 관련 단체
-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 2023년 주요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위생용품 지원 1,000천원
- 나트륨 줄이기 지원사업 8,000천원
- 일반음식점 조리장 후드청소 지원사업 (20개소) 10,000천원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 (160개소) 16,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①	2023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합 계		115,388	82,751	67,711	△15,040	
예치금	대구은행	90,000	80,000	60,000	△20,000	정기예금
	대구은행	25,388	2,751	7,711	4,960	보통예금

□ 자활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 2023년 주요사업

- 점포 전세금 대여 30,000천원
-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및 소양직무 교육 1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a)	2023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예치금	대구은행	867,814	870,924	870,274	△650	

□ 재난관리기금

○ 지원대상

- 재해예방 홍보 및 긴급복구

○ 2023년 주요사업

- 재해예방 및 복구 물품 구입(감염병 등) 30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염화칼슘 등) 20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450,000천원
- 제설장비 구입 4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a)	2023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예치금	대구은행	10,642,036	12,448,372	13,647,025	1,198,653	

□ 옥외광고발전기금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2023년 주요사업

- 현수막 게시대 관리 22,000천원
- 지정 벽보판 관리 3,000천원
- 광고물 철거비 2,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①	2023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305,037	207,506	184,677	△22,829	

□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격려
- 유소년·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 기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 2023년 주요사업

- 지역 체육진흥 사업 20,000천원
- 예치금 759,96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①	2023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783,416	769,040	759,960	△9,080	

7. 종합검토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 2023년 우리군의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되어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 8개의 기금을 운용합니다.
- 2021년도 결산검사 시 자활기금의 민간융자금에 대하여 안전한 임대보증금의 환수를 위해 조례 규정 정비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